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21.7.20.)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근거 조문 변경(제6조 개정)

- 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과 대변기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④항 및 제⑤항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기준을 정한 동법 시행령의 근거 조문 ‘제7조 제③항 및 제⑤항’을 ‘제7조 제③항 및 제⑦항’으로 변경

나.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개정(별표 5의3, 5의4 신설)

- 1)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③항 및 제6조의2 관련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5의3과 5의4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30. ~ 3. 11.)

3) 행정규제 : 국조실 규제 심사 예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예방 및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대변기 측면 칸막이 아랫부분은 5밀리미터 이하로 막아야 한다. 다만,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측면 칸막이 아랫부분에 빈 공간을 둘 수 있다

5의4. 환기 등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에서 30센티미터 이상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내에 개별 환기 시설이 있는 경우 칸막이 상단 높이를 바닥에서 220센티미터 이상 또는 천장 높이까지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② (생략) ③법 제7조제3항 및 <u>제5항</u> 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7항</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545